

의안번호	2210097
의 퇴 인	장철민의원
회 답 일	2025. 6. 13.
추계번호	25C2550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용성평등지수를 개발·보급하고 조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7,000만원씩 총 3억 5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고용성평등지수 조사 (안 제19조의2)	70	70	70	70	70	350	7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9조의2(고용성평등지수 등)	여성가족부장관은 사업주 또는 법인별 남녀고용평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제20조제3항 ¹⁾ 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의 정보를 포함한 고용성평등지수를 개발·보급하고 매년 조사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) 제20조(적극적 조치 등)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 및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할 수 있다.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9조의2(고용성평등지수 등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고용성평등지수 개발·보급 및 조사와 관련된 소요비용은 같은 법 제19조²⁾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사례를 참고로 하여 추계함
- 추계기간 동안 조사 비용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법률안 심사·의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용성평등지수를 개발·보급하고 매

2) 제19조(국가성평등지수 등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의 성평등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사회참여의 정도, 성평등 의식·문화 및 여성의 인권·복지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성평등지표를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
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·공표하여야 한다.

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표를 개발·보급하고, 지역성평등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성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성평등지수를 매년 조사·공표하여야 한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 결과, 성평등 수준이 낮은 지표에 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표 및 지역성평등지표에 관한 각 지표별 통계와 지표의 특성 등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⑥ 제2항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, 제3항에 따른 지역성평등지수의 내용 및 조사·공표의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조사용역을 위한 일반연구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(안 제19조의2)

-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지수를 조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19조에 따른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 조사가 있고, 개정안에 따른 조사비용 등은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수 분석을 위한 비용을 참고하여 산정함
 - 여성가족부는 “성평등지수 관리” 사업(2025년도 예산 7,000만원)을 통하여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수 분석을 실시하고 있음

[표 2] 성평등지수 관리 사업 예산(2025년 예산 기준)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사업내용	예산액
성평등지수 관리	· 국가성평등지수 관련: 40 · 지역성평등지수 관련: 30	70

자료: 여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추계결과, 고용성평등지수를 개발·보급 및 조사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7,000만원씩 총 3억 5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3] 고용성평등지수 조사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고용성평등지수 조사 (안 제19조의2)	70	70	70	70	70	3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